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4.1조
공표

1. 각 당사국은 수입 및 수출에 관련된 법, 규정 및 일반 행정절차를 인터넷을 포함하여 공표한다.

2. 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합리적인 질의를 다루는 하나 이상의 문의처를 지정하거나 유지하며, 그러한 문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3.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이해관계인에게 수입 및 수출에 관련된 일반법, 규정 및 일반 행정절차의 제안된 도입 또는 개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와 합리적인 기간을 제공한다.

제4.2조
상품의 반출

1. 양자 간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제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자국의 관세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상품을 반출하도록 규정하는 절차

나. 상품이 도착하는 즉시 반출될 수 있도록 상품이 도착하기 전에 통관 정

보가 수기로 또는 전자적으로 제출되고 처리되도록 규정하는 절차

다. 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도착지점에서 상품이 반출되도록 허용하는 절차, 그리고

라. 적용 가능한 관세, 조세 및 수수료에 대하여 자국 관세 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저해함이 없이, 수입자가 보증과 함께 상품을 세관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

제4.3조
자동화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상품의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가. 세관 이용자가 전자시스템에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나. 국제 표준을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다. 국제무역 데이터의 양국 간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시스템과 호환 가능한 전자시스템을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라. 세계관세기구(이하 “WCO”라 한다)의 관세데이터모델과 WCO의 관련 권고사항 및 지침에 따라 일련의 공통적인 데이터 요소와 처리절차를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제4.4조
위험관리

각 당사국은 자국 관세 당국이 검사 활동을 고위험 탁송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저위험 탁송물의 통관 및 이동을 간소화하는 평가 및 선별을 위한 전자 또는 자동화된 위험관리시스템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제4.5조
협력

1. 이 협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정정책의 중요한 수정이나 수입 및 수출을 규율하는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관련된 그 밖의 유사한 진행사항에 대한 사전통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상품의 합법적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약속을 확인하며, 통관 기술 및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전산화 시스템에 관한 전문성을 교환한다.

3. 양 당사국은 다음을 약속한다.

가. 상품의 수입, 수출 및 통과에 대한 관세 관련 사안에서 양 당사국 간 무역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에 따라 무역에 사용된 문서 및 자료 요소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

나. 관세분석소와 과학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관세분석 방법의 조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

다. 세관 직원을 교환하는 것

라. 관세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공무원을 위하여 관세 관련 문제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조직하는 것

마. 무역 및 비즈니스 공동체와 의사소통을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

바.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수입 상품의 품목분류, 평가 및 원산지 결정에 상호 지원하는 것

사. 수입, 수출, 재수출, 통과, 환적 및 그 밖의 통관절차에 대하여, 그리고 특히 위조품에 대하여 관세 당국의 강력하고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집행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아. 무역을 원활히 하면서, 모든 장소로부터 양 당사국으로 수입, 환적 또는 통과되는 해상화물과 그 밖의 화물의 보안을 증진하는 것. 양 당사국은 강화되고 확대된 협력의 목적이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한다.

1) 국제무역의 물류망을 확보하기 위한 세관 관련 측면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조하는 것, 그리고

2) 실행 가능한 최대 한도에서, 화물 보안과 관련된 문제가 적절히 제기되고 논의될 수 있는 모든 다자간 포럼에서 입장을 조율하는 것

제4.6조
비밀유지

1.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한쪽 당사국이 그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은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될 것이며 다른 쪽 당사국이 정보 요청에 명시한 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이고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에게 정보를 제공한 인의 명시적 허락 없이는 공개되지 않을 것임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2. 한쪽 당사국이 제1항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정보를 접수한 경우, 그 정보를 접수한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 자국의 국내법 및 법 제도에

따라 법 집행의 목적상 또는 사법절차 과정에서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3.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제1항에 합치되게 행동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당사국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은 공개되면 그 정보를 제공한 인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그 당사국의 관세법 행정에 따라 제출된 비밀 정보의 무단 공개로부터 보호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제4.7조
특송화물

각 당사국은 적절한 통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특송화물을 위한 신속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권장된다. 이러한 절차는,

가. 특송화물을 위한 별도의 신속한 통관 절차를 규정하고, 적용 가능한 경우, WCO 탁송물 즉시반출 지침을 활용한다.

나. 특송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그 화물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가 수기로 또는 전자적으로 제출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다. 가능한 한도에서, 특정 상품이 최소한의 서류로 통관되도록 규정한다.

제4.8조
재심 또는 불복청구

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에 대한 자국의 결정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가 다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가. 그 결정을 내린 직원 또는 부서보다 높거나 독립된 한 단계의 행정적 재

심 또는 불복청구, 그리고

나. 그 결정에 대한 사법적 재심 또는 불복청구

제4.9조
벌칙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벌칙, 그리고 적절한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제4.10조
사전심사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자국의 관세 당국을 통하여 다음에 대한 사전심사서 또는 정보를 발급한다.

가. 세번변경에 대한 심사

나.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에 따른 특정한 사안에 대한 관세평가기준의 적용에 관한 정보, 또는

다.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

2. 당사국이 발급한 사전심사 및 정보는 그것을 구한 신청인과 관련하여 그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3. 각 당사국은 자국 관세 당국이 요청을 접수한 후 90일 내에 사전심사를 발급한다. 다만, 신청인은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상품의 견본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출했어야 한다. 사전심사를 발급할 때, 그 당사국

은 신청인이 제공한 사실 및 상황을 고려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상황이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전심사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사전심사의 발급을 거부하는 당사국은 사전심사의 발급거부결정에 관한 관련 사실 및 근거를 적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보한다.

4.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사전심사가 발급된 날 또는 사전심사에 명시된 다른 날에 사전심사가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한다.

5. 발급 당사국은 사전심사 결과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신속하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6. 각 당사국은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의 행정적 재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7. 신청인이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전심사에 관한 관련 사실 또는 상황을 누락하는 경우, 또는 사전심사의 조건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민사, 형사 및 행정적 조치, 금전상의 벌칙, 또는 그 밖의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제4.11조
협의

1. 어느 한쪽 관세 당국은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운영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요청 당사국이 제공한 합리적 근거 또는 사실이 있는 경우 다른 쪽 관세 당국에 언제라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관련 접촉선을 통하여 수행된다.

2. 그러한 협의가 그러한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요청 당사국은 그 사안을 제4.12조에 언급된 관세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4.12조 관세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관세 당국으로 구성된 관세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양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양 당사국의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고, 이 장들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

3.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효과적이고, 통일되며, 일관된 운영의 검토, 논의 및 제안

나.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효과적이고, 통일되며, 일관된 해석을 위한 통일된 규정의 검토, 논의 및 제안

다.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HS”라 한다) 전환에 기초한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개정

라. HS에 따른 상품의 분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발생할 수 있는 차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마.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개정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개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

4. 위원회는 매년 또는 달리 합의하는 바에 따라 양국 간 교대로 회합한다.